

### 정밀안전진단 업무체계

| 업무순서                        | 수행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업무내용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건조물 문화유산에 이상 징후 또는 중대 결함 발견 | 소유자, 관리자, 관계전문가, 관련기관 등                 |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, 메일, 민원 등                    |
| 현지조사 의뢰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자치단체→관계전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사보고서 작성·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고서 자율양식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검토               |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문회의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 필요 또는 불필요 결정                 |
| 정밀안전진단 신청                   | 지방자치단체→국가유산청(건축유산팀), 국립문화유산연구원(안전방재연구실) | 문서 신청(조사보고서 및 자문의견서 첨부)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            | 국립문화유산연구원(안전방재연구실)                      | 현지조사 또는 서류 검토, 자문위원회 개최 등                   |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여부 판정         |
| 판정 결과 통지                    | 국립문화유산연구원→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| 정밀안전진단 또는 모니터링, 주의관찰, 보수 필요 등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련예산 확보                     | 국가유산청<br>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음년도 예산 요구 및 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긴급한 경우 당해 연도 긴급보수비 신청 및 자체예산 확보 |
| 안전진단기관 지정                   |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업지시서 작성, 발주,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유산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참조  |
| 사전조사 및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·제출       | 안전진단전문기관→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장 확인, 과업지시서 내용 검토 등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과업수행계획서 검토요청                | 지방자치단체→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| 문서 및 관련자료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행계획서 수정·보완 및 승인            |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밀안전진단 실시                   | 안전진단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고회 또는 자문회의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문회의 2~3회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요청         | 지방자치단체→국립문화유산연구원, 국가유산청                 | 진단 보고서 및 설명자료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정성 검토                      |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진단결과 심의(보수 필요시 국가유산위원회 검토) 안전등급에 따른 대책방안 결정 | 용역업체 브리핑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정성 검토결과 통지                 | 국립문화유산연구원→지방자치단체, 국가유산청                 |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·보완 요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완내용 피드백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밀안전진단 완료보고                 | 자치단체→국가유산청,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                |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 연구원에 최종 파일 및 책자 제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후속조치이행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산확보 및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요 시 응급조치                       |